

審 查 報 告 書

1999. 12. 21
總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12. 14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12. 16
- 라. 上程日字 : 1999. 12. 21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方景泰)

가. 提案理由

- 석남동 관할 예천2동에 대단위 아파트(현대아파트, 236세대)가 건립되면서 기존의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유대가 미흡하고,
- 자연마을과 아파트의 총 세대수가 543세대에 달하여 통장 1인이 관리하기에 업무의 양이 과중함은 물론, 이로 인하여 각종 시책의 말단 침투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,
- 예천 2동의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통·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동지역 석남동란의 예천2통을 분통하여 예천3통을 신설 조정함(안 별표1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하여
 - 동(洞)관할 자연마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
 - 동의 하부조직인 “통장”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원활한 시정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수행에 차질이 있어, 과밀 “통”을 “분통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이는 현실에 맞게 동의 하부조직을 개선하고 행정환경 여건에 대처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

- 질의 : 해미면과 인지면등 분통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에 누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?
- 답변 : 해미면과 인지면에서 분통요구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되었으며, 앞으로 분통이 필요한 곳은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조치하겠음.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查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20 호
의결년월일	1999. 12. 24 (제 47 회)

서산시행정동·리의명칭·관할구역및동·리장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12. 14

서산시행정동·리의명칭·관할구역및동·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석남동 관할 예천2동에 대단위 아파트(현대아파트, 236세대)가 건립되면서 기존의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유대가 미흡하고
- 자연마을과 아파트의 총 세대수가 543세대에 달하여 통장 1인이 관리하기에 업무의 양이 과중함은 물론, 이로 인하여 각종 시책의 말단 침투 및 대 주민 행정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
- 예천 2동의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통·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동지역 석남동란의 예천2통을 분통하여 예천3통을 신설 조정함(안 별표1).

□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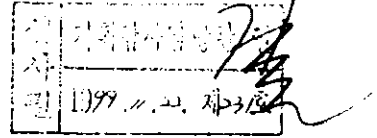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

나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'99. 11. 10 ~ 11. 20
- 예고결과 : 재출의견 없음

다. 예산조치 : 통·반장 수당 2000년 추경에 반영

서산시조례 제 호



서산시행정동·리의명칭·관할구역및동·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행정동·리의명칭·관할구역및동·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석남동의 관할구역란중 “예천동(1, 2통)”을 “예천동(1, 2, 3통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		개		
행정동명	동장정수	관할구역	행정동명	동장정수	관할구역
석남동	1	석남동(1, 2, 3통)	-----	--	-----
		양대동(1, 2, 3, 4통)			-----
		죽성동(1, 2, 3통)			-----
		<u>예천동(1, 2통)</u>			<u>예천동(1, 2, 3통)</u>
		오남동(1, 2, 3, 4통)			-----
		장동(1, 2통)			-----
		덕지천동			---